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30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김주영 · 박홍배
손명수 · 강득구 · 남인순
진선미 · 김영환 · 윤후덕
이용우 · 허영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복무기간(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)”을 “복무기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병역법」에 따른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<u>복무기간(12개월 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)</u> 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 다만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.	제18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복무기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